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190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0일

중소기업청장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ICT 기술의 발달과 업종간 융·복합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유망 업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개인의 창의성 발현 및 1인 창조기업의 창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원범위를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지식서비스창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전화 : 042-481-4553, Fax : 042-472-3428)

법률 제 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을 “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1인 창조 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u></p> <p><u><단서 신설></u></p>	<p>제2조(정의) ----- ----- ----- ----- ----- ----- ----- ----- ----- -----</p> <p>- <u>다만,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u></p>

[별표 1]

1인 창조기업의 범위(대통령령 제2조 제1항 관련)

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0
	음료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1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전기장비 제조업	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가구 제조업	32
	기타 제품 제조업	3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출판업	5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
	방송업	60
	통신업	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70
	전문서비스업	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교육 서비스업	온라인 교육학원업	85504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업	8565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 비고 :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다